



: 2017-10-1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구단115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단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68,682,960원, 지방교육세 4,412,320원, 농어촌특별세 3,621,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4.경부터 2015. 4. 2까지 사이에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 등 [REDACTED]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1,615,307,990원에 그 소유권을 취



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취득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학술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6. 3. 28.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사용실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되었다.

라.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8,682,96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412,3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621,3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 등의 면제(학술연구단체) 주장

원고의 사업목적 중 가장 핵심이자 주된 사업은 도로교통법 및 원고의 정관 제 1,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 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도로교통 안전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사업이고, 그 밖의 사업 등도 학술적인 조사와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원고의 주된 사업 대부분이 학술연구와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법이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과세관청은 원고에 대하여 학술연구단체로 인정하여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왔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음에도 이와 다르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0. 1. 4. 법률 제3234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66조의7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0. 5. 22. '도로교통안전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83조에 따라 그 명칭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86조에서 그 목적사업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이 추가되었으며,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123조에서 목적사업에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가 추가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3조와 원고의 정관 제5조가 정한 목



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원고의 목적사업 중 경영관리 등의 부대사업을 제외한 주요사업별 예산결산내역과 2015년도 예산 배정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비율)
교통안전기술 개선사업	25,835	25,492	19,820	26,377	97,524(22.7%)
교통안전교육 홍보사업	6,689	6,063	5,762	6,968	25,482(5.9%)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업	13,580	35,064	23,597	24,578	96,819(22.5%)
운전면허시험	54,517	48,601	41,957	50,827	195,902(45.5%)



관리사업					
교통안전연구 개발사업	3,335	3,775	3,693	3,882	14,685(3.4%)

4) 원고의 임직원 중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임직원은 약 1,800여명이고, 그 직급 중 학술연구와 관련된 연구직은 44명이다.

5)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건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5. 12. 31.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1호)',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2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이어야 하고,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 내역, 예산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갑 제13호 내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교통안전교육사업이나 교통안전연구사업 부분에서 매년 일정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술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로교통법과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목적사업에는 학술연구와 관련된 도로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사업 이외에도 교통방송, 도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운전면허시험관리,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적성검사 등 학술연구 및 발표와 관련이 없는 사업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②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예산지출 결산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예산 중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운전면허시험관리사업이 45.5%,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업은 22.5%를 차지하는 반면, 학술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교통안전연구개발사업은 3.4%에 불과하다.

③ 한편 2014년 예산 중 교통안전기술개선사업에 책정된 예산 198억 2,000만 원 중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 사고통계분석DB구축, 교통사고조사 및 분석, 안전시설신호기술지원 등에는 합계 18억 3,300만 원이 책정된 반면,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교통과학장비검사에 26억 1,900만원, 교통과학장비위탁관리사업에 124억 9,200만 원이 배정되는 등 교통안전기술개선사업 중 연구·개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④ 교통안전교육홍보사업도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 특성상 학술연구와 발표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의 임직원 중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직이 전체 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44/1800)에 불과하고, 계약직을 포함할 때는 그 비중이 더 낮아진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신인 교통안전협회는 지방세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세 비과세 대상인지 질의를 하여 1988. 2. 4.경 지방세 비과세 대상임을 회신 받은 사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용인시 기흥구청장 등 다른 과세관청이 원고를 학술연구단체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비과세 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다.

② 지방세에 관하여 감독할 권한이 있는 내무부장관이 1988. 8. 2.경 원고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교통방송, 운전면허시험관리 등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새로 추가되고, 그 사업이 원고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등 여러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내무부장관의 견해표명은 원고의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목적사업인 운전면허시험관리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할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원고를 학술연구단체로 보아 재산세 등은 면제하였으나, 피고와 창원시장 등은 원고를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등 과세관청마다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 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